(은행보관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서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과 계약권유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유형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유형	
최초계약일		계약만기일(계약기간)	(5년)
최초계약금액		해지대금 연결계좌	
연납입한도		모델포트폴리오명	

2. 투자정보 등 수령*

구분		통지선택	이메일	카카오알림톡 (주1)	우편(주2)	수익률 지정(%)
투자자산 매매전 사전 통지(수시) / 기타 주요 안내 통지(발생시)		필수통지	□	□		
투자일임보고서 수령(매 분기_연 4회)		필수수령	□		□ 자택 □ 직장	
투자수익률 통지 (누적수익률기준, 최초 도달시 1회 통지)	상한(+)수익률	□통지불원	□	□		+ (%)
	하한(-)수익률	□통지불원	□	□		- (%)

(주1) 카카오 알림톡 미가입 등 발송 오류 시 문자(SMS)로 발송됩니다.
(주2) 우편 제공 요청 시 주소 오류 반송, 분실 등의 사유로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보 수령처는 투자자의 주소/전화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용량 초과, 시간 초과,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거나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세한 내용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상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요구에 따릅니다.
④ 개별종목 취득 · 처분시 그 종목 · 수량 및 취득 · 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 · 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 합니다.
⑤ 해당 투자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 ·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 · 처분한 자산의 종목 · 수량 및 취득 · 처분의 방법 등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릅니다.
⑥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안정성 · 수익성, 취득 · 처분한 종목 및 수량의 투자자 적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실행합니다.
⑦ 계약 만기시점에는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보유자산 모두 매도 후 해지대금 연결계좌로 입금 처리 되며, 계약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금융상품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사후확인 콜이 진행되는 경우 투자자(대리 신규시 대리인 포함)의 휴대전화로 진행됩니다.
⑨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

-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 계약권유문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계약서 및 약관 등)**
- **일임계약의 내용,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모델포트폴리오간 내용의 차이,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 해지, 과세특례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 고 이 해 하 였 음]
-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 고 이 해 하 였 음 을 확 인 함]
- **은행 및 이해관계인(계열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ELS, ELB 등), RP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듣고 동의함]
- **투자재산의 인출로 운용대상 금액이 최소금액 미달 등 운용이 불가할 경우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지 않고, 안전자산(MMF, RP등) 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 [듣고 동의함]

위와 같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일자 년 월 일

투자자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하나은행 지점

은행은 투자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판매직원** 직위 직원명 (인) 연락처

※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은행의 상담센터(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21-0001(3-1) (210×297) NCR54g/㎡ (2020.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0-약관-18 0호

하나은행

(투자자보관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과 계약권유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유형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유형	
최초계약일		계약만기일(계약기간)	(5년)
최초계약금액		해지대금 연결계좌	
연납입한도		모델포트폴리오명	

2. 투자정보 등 수령*

구분		통지선택	이메일	카카오알림톡 (주1)	우편(주2)	수익률 지정(%)
투자자산 매매전 사전 통지(수시) / 기타 주요 안내 통지(발생시)		필수통지	□	□		
투자일임보고서 수령(매 분기_연 4회)		필수수령	□		□ 자택 □ 직장	
투자수익률 통지 (누적수익률기준, 최초 도달시 1회 통지)	상한(+)수익률	□통지불원	□	□		+ (%)
	하한(-)수익률	□통지불원	□	□		- (%)

(주1) 카카오 알림톡 미가입 등 발송 오류 시 문자(SMS)로 발송됩니다.
(주2) 우편 제공 요청 시 주소 오류 반송, 분실 등의 사유로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보 수령처는 투자자의 주소/전화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용량 초과, 시간 초과,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거나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세한 내용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상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요구에 따릅니다.
④ 개별종목 취득 · 처분시 그 종목 · 수량 및 취득 · 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 · 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 합니다.
⑤ 해당 투자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 ·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 · 처분한 자산의 종목 · 수량 및 취득 · 처분의 방법 등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릅니다.
⑥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안정성 · 수익성, 취득 · 처분한 종목 및 수량의 투자자 적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실행합니다.
⑦ 계약 만기시점에는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보유자산 모두 매도 후 해지대금 연결계좌로 입금 처리 되며, 계약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금융상품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사후확인 콜이 진행되는 경우 투자자(대리 신규시 대리인 포함)의 휴대전화로 진행됩니다.
⑨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

-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 계약권유문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계약서 및 약관 등)**
- **일임계약의 내용,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모델포트폴리오간 내용의 차이,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 해지, 과세특례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 고 이 해 하 였 음]
-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 고 이 해 하 였 음 을 확 인 함]
- **은행 및 이해관계인(계열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ELS, ELB 등), RP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듣고 동의함]
- **투자재산의 인출로 운용대상 금액이 최소금액 미달 등 운용이 불가할 경우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지 않고, 안전자산(MMF, RP등) 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 [듣고 동의함]

위와 같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일자 년 월 일

투자자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하나은행 지점

은행은 투자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판매직원** 직위 직원명 (인) 연락처

※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은행의 상담센터(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21-0001(3-2) (210×297) NCR54g/㎡ (2020.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0-약관-18 0호

하나은행

(투자자보관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 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어민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상담요청)
①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 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운용제안)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안(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안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 제3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어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입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별 인출가능 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객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
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지]

1. 랩 서비스 명 : KEB하나 1Q 일임형ISA

구분	세부내용
최저가입(계약)금액	10만원
수수료 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후취) ( )는 온라인 수수료	KEB하나 1Q일임형ISA 최저위험 : 연 0.1%(0.1%) KEB하나 1Q일임형ISA 저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2%(0.2%) KEB하나 1Q일임형ISA 중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4%(0.3%) KEB하나 1Q일임형ISA 고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5%(0.4%)
수수료 납부일	매 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1. 분기말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2. 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2. 모델포트폴리오

모델포트폴리오명	적합투자자유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KEB하나 1Q일임형ISA 최저위험	안정형	[국채 등 채권펀드 및 안정적 유동자산에 주로 투자]
KEB하나 1Q일임형ISA 저위험 (포커스/밸런스)	안정추구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KEB하나 1Q일임형ISA 중위험 (포커스/밸런스)	위험중립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KEB하나 1Q일임형ISA 고위험 (포커스/밸런스)	적극투자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 포커스/밸런스의 차이는 국내주식형 펀드 편입 여부
* 채권형은 국내채권형/해외채권형 펀드, 대안/혼합형은 절대수익추구형/혼합형/원자재형/구조화형 펀드, 유동성은 MMF/RP/예탁금 등
* MP의 자산배분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21-0001(3-3) (210×297) NCR54g/㎡ (2020.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0-약관-18 0호

하나은행